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케이씨피드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와 2017년 7월 2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케이씨피드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

1: 0.1412906

3. 소멸회사의 현황

가. 상호 :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

나. 본사 소재지 : 경남 거창군 남상면 홍덕길 22

4. 합병기일 : 2017년 9월 26일

- 5. 주식회사 케이씨피드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-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

2017년 8월 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합병에 대한 이사 회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- 나. 기간 : 2017년 8월 10일 ~ 2017년 8월 23일
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- 1) 명부주주 : 2017년 8월 23일까지 당사 총무팀으로 제출

(송부처 :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20 ㈜케이씨피드 총무팀(☎054-332-6512))

2) 실질주주 : 2017년 8월 21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
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.
-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.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케이씨피드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주식회사 케이씨피드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케이씨프레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주주명	
소유주식종류	소유주식수	

년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2017년 8월 9일

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20

주식회사 케이씨피드

대표이사 정한식, 김희철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